

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021-1월호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목 차

■ 북한 사회보장 관련 법제 분석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II.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기본 제도	1
III. 북한 「사회보장법」 분석	2
IV. 북한 사회보장 관련 부문법 분석	6

북한 사회보장 관련 법제 분석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 2003년 「장애자보호법」, 2007년 「년로자보호법」, 2008년 「사회보장법」,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 「녀성권리보장법」 등을 제정하여 사회보장 관련 법제를 정비하였음.
- 특히 2008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 관련 기본법령에 해당하는 것이며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법제화하고 체계화 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에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제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고려한다면 기초 연구 자료로써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북한 사회보장 관련 법제 분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북한 사회보장 관련 기본 제도와 관련 법령을 분석해보고자 함.

II.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기본 제도

1. 국가사회보장제도

- 북한에서 국가사회보장제도는 근로자들이 노동능력을 장기적으로 완전히 잃었을 때, 그들과 부양가족 그리고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제도임.¹⁾
-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국가사회보장제도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하고 있음(제1조, 제2조, 제3조).²⁾
- 북한의 사회보장 적용대상의 범위는 남한의 경우보다 협소한 편이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복지체계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

1) 『광명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2009, 558면.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법률출판사, 2012, 참조.

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준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역시 국가사회보장제를 명시하고 있음.

2. 국가사회보험제도

- 북한의 국가사회보험제도는 「사회주의노동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국가사회보험제도는 근로자가 노동재해, 질병, 부상, 임신, 해산 등의 이유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했을 경우 근로자의 건강 보호증진과 생활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말함.³⁾
- 「사회주의노동법」 제73조에서는 “국가는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준다”고 규정하여 국가사회보험제도를 명시함.⁴⁾

Ⅲ. 북한 「사회보장법」 분석

1. 헌법적 근거

- 북한 「사회주의헌법」에서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제25조)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으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고(제72조) 규정하여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2. 사회보장법의 기본(제1장)

-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사업을 통해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3) 『광명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2009, 557면.

4) 『김일성전집 66』,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502-503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되었음(제1조).

- 이에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의 혜택이 정확히 주어지도록 하며(제2조)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더 우대하도록 하고 있음(제3조).
- 또한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투자원칙(제3조), 사회보장기관의 운영원칙(제5조), 사회보장금지출(제6조) 등에 관한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음.

3. 사회보장수속(제2장)

- 사회보장신청은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공민이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며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대상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회보장신청문건을 작성하여 대상에 따라 중앙로동행정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 제출함(제10조).
-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신청문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제때에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제12조).
-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신청문건심의에서 승인된 공민을 사회보장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자로 등록된 공민에게는 사회보장금증서를 발급함(제13조).
-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자등록정형을 그가 거주하고있는 지역의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하며 사회보장자가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그의 사회보장등록자료를 해당 거주지역 인민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함(제14조).
- 사회보장자로 선정되면 노동능력에 대한 의학감정, 생활상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에 통보, 사회보장연금과 보조금지불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됨(제16조).

4. 사회보장금의 지출(제3장)

-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자금이며,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지출함(제17조).
-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연금, 보조금의 지불과 사회보장기관의 운영, 장애보조기구의 생산, 공급 같은 목적에 지출함(제18조).
- 사회보장자는 사회보장금증서에 따라 사회보장연금과 보조금을 받음(제19조). 하지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였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위법행위를 하여 법적제재를 받고있는 경우, 사회보장신청을 허위로 하였

을 경우, 국가로부터 생활상방조를 따로 받고있는 경우, 기타 따로 정한 법규에 사회보장연금,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제22조).

5.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제4장)

-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기관의 운영체계를 세우고 개선하며(제24조) 영예군인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같은 사회보장기관을 조직하고 책임적으로 관리운영함(제25조).
- 돌볼 사람이 없거나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의 부양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자는 사회보장기관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있는 대상을 사회보장기관에서 생활하게 하려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26조).
- 사회보장기관에서 생활하려는 대상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는 사회보장자파송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인민위원회에 내며(제27조) 사회보장자파송신청문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10일안으로 심의·결정하여야 함(제28조).
- 사회보장자를 사회보장기관에 보내는 사업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가 맡아서 하며 러비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함(제30조).
- 다만, 보호자, 부양자가 나타났을 경우, 로동행정기관의 로력과견장을 받았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3개월 이상 정해진 부양료를 바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보장기관의 부양을 받지 않고도 자체로 생활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회보장자를 사회보장기관에서 내보냄(제35조).

6. 보조기구의 생산 및 공급(제5장)

-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함(제38조).
- 보조기구를 공급받으려는 장애자는 신청서를 만들어 해당 인민위원회에 내며(제39조) 보조기구는 정해진 기관, 기업소에서 공급함(제40조).
- 보조기구의 값과 장애자가 보조기구를 공급받기 위하여 오가는데 든 러비는 국가와 본인이 부담함(제41조).

7.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6장)

-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하며(제45조)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보건기관, 재정은행기관,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로력, 자금, 설비, 물자를 제때에 보장하도록 함(제46조). 또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함(제47조).
- 사회보장금을 비법적으로 지출, 류용, 횡령하였거나 사회보장시설을 파손, 분실시켰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제48조) 이 법을 어겨 사회보장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지움(제49조).

8. 특징

-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북한은 2008년 「사회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보장 관련 기본법제를 마련한 것이며 북한이 처음으로 직접 사회보장에 대해 규정한 법령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보장법」 이전에는 각 법령에 사회보장의 성격을 지닌 조문들과 개별 법령들이 나뉘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회보장법」의 제정은 사회보장법제의 기본법령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됨.
- 이에 북한 「사회보장법」은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구체화 시키고 이를 법체계화 시키는 것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대상별 권리를 명시한 법령들을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⁵⁾
- 따라서 「사회보장법」이 기본법령이라는 특성 하에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사회보장수속, 사회보장금의 사용과 지출, 보조기구의 생산과 공급 같은 사회보장에 관한 보편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5) 이철수, “2008년 북한 사회보장법에 대한 연구”,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863면.

IV. 북한 사회보장 관련 부문법 분석

1. 노동관련 사회보장 부문법

1) 「사회주의로동법」

(1) 개요

- 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은 1978년 4월 18일 제정된 이후 1986년, 1999년 및 2015년까지 3차례의 개정이 있었음. 약 16년 만에 이루어진 2015년 개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산후 휴가가 기존의 90일에서 180일로 변경되었으며(제66조), 다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2) 주요 내용

가. 근로자 기초생활보장

- 북한은 해당 법령을 통해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생활비 지급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제37조, 제39조), 근무평가가 좋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장려금 지급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제40조).
-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한 책임의 보장과 더불어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국가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있음(제68조). 구체적으로 국가부담 및 운영책임을 통한 주거와 식량배급, 탁아소·유치원 운영, 학생들의 교복·교과서·장학금 지급, 의무무상교육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림집, 합숙을 보장하고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협동농장원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68조, 제69조), 근로자와 부양가족에게 식량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70조). 또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탁아소와 유치원을 운영하고(제71조), 근로자 자녀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 및 무상 대학교육과 모든 학생들의 교복과 교과서의 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72조).

나. 노동보호사업

- 한편, ‘노동보호사업’을 강조하며 산업위생조건 구비 및 개선·완비(제55조), 생산 및 작업환경 안전상태 점검(제56조), 공장·기업소·건물·건축물 건설 및 기계설비 제작 시에 근로자의 노동보호조건 구비 및 검열, 감독 허가(제57조), 근로자 정기 건강검진(제58조) 등의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노동보호정책 사업을 강조하고 있음.

다.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사업

- 해당법령은 탁아소·유치원·아동병동·편의시설의 운영 및 일할 수 없는 여성들의 희망에 따른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여성근로자들의 노동환경보장에 대한 각종 규정들을 두고 있음(제31조).
- 이외에도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둘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면서, 여성근로자를 위한 노동보호위생시설 구비, 힘든 노동과 건강에 해로운 작업 배제, 임신부의 야간노동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59조). 또한 산전 60일, 산후 180일 간의 휴가가 보장됨(제66조).

라. 공공부조

- 국가는 노동으로 인한 재해, 질병,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사회보험제’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국가사회보장제’를 통해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73조). 또한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에게 유가족연금을 지급하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양육하도록 하고 있음(제77조).
- 남성 60세, 여성 55세에 이른 근로자가 일정한 근속노동연한을 가진 경우 연로연금을 지급하며(제74조),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은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상으로 돌보도록 하고 있음(제78조).
- 노동 및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돌린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5조).

- 정기 및 보충휴가기간에 평균생활비 또는 평균노력일을 주며 산전·산후휴가 기간에 일시적보조금 또는 평균노력일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6조).
- 근로자 및 협동농장원과 그 가족들은 치료·요양·예방·해산 등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음(제79조).

2) 「로동보호법」

(1) 개요

- 북한의 「로동보호법」은 2010년 제정되어 2014년 개정이 단행되었음. 총 8개의 장과 73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로동보호법의 기본”, “로동안전교양”,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로동과 휴식”, “로동안전규율의 확립”, “로동재해의 구호와 사고심의”,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 북한은 「로동보호법」을 따로 규정하며 노동환경과 관련하여 탁아소, 휴게소, 유치원, 식당 등과 같은 각종 편의시설 보장하고 있음(제21조).
- 또한 노동안전시설 관련 규정(제17조, 제18조, 제19조)과 노동위생조건 보장(제20조) 및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제22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임산부의 산전산후휴가 및 근로조건 보장(제24조), 노동보호물자 공급(제27조부터 제34조), 노동시간 및 휴식, 휴가 보장(제35조부터 제41조), 노동안전규율(제42조부터 제51조), 노동재해구제(제52조부터 제64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노동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심의하여 해당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구제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제71조).

3) 노동관련 사회보장 부문법 특징

-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표방하며 각종 사회보장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사용자인 국가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배급·주택·생활비·의료·교육 등과 같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의 노동환경과 관련한

- 각종 여건 구비를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배급과 생활비 지급 보장 규정을 두고 있음.
- 해당법령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보호사업을 강조하고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무상의료서비스 혜택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사회보험제’, ‘국가사회보장제’를 통한 보조금 및 연금제도를 두어 노동능력상실자와 연로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제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노동보호법」은 「사회주의노동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동보호사업과 관련 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2. 아동 관련 사회보장 부문법

1) 「아동권리보장법」

(1) 개요

-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2010년 제정되어 2014년 개정됨. 해당법령은 총 6개의 장과 6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의 최대보장을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하여(제1조), 아동의 평등권보장원칙(제3조), 아동중시원칙(제4조) 등 아동권리보장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아동은 무상교육, 무상치료, 무상의무교육, 무상치료를 향유할 수 있음(제5조). 구체적으로 12년제 무상 의무교육의 권리(제23조), 출판물·문예작품 등의 보급(제29조), 병의 예방과 치료에 따른 비용 일체 국가부담(제33조), 탁아소·유치원·학교에 의료진배치 및 의약품 등 보급(제34조), 아동전문병원 배치 및 운영(제35조), 아동요양시설 운영(제36조), 영양제·영양식품·생활용품 공급 보장(제37조),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치료·생활조건 보장(제30조),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부담 양육(제31조)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가정에서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교양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1조), 아동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법기관은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제47조).

2) 「어린이보육교양법」

(1) 개요

-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은 1976년 제정되어 1999년과 2013년에 걸쳐 두 차례 개정됨. 해당법령은 총 6개의 장과 6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시책의 하나”라고 명시하며 모든 어린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양육하며(제2조),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고 여성의 어린이 양육부담 해방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6조).
- 제2장에서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에 대해 규정하면서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책임과 보장(제12조), 탁아소 및 유치원의 보육교양설비·체육놀이시설·악기·놀이감·출판물·교구 등과 같은 건설 및 비품 보장(제13조), 아동공원과 놀이터 및 놀이시설 설비(제14조), 출생 직후 식량공급 보장(제15조), 식료품 정상 보장 및 위생안전성 보장(제16조), 어린이용품 보장(제17조) 등을 규정하여 어린이 보육 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의 지원을 보장하고 있음.
- 또한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는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양육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혁명열사·애국열사·인민군후방가족·영예군인의 자녀에 대한 특별보호와 보육교양에 혜택을 주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제19조).
- 이외에도 여성의 산전산후휴가 보장과 해당기간의 생활비, 식량 등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보장하며, 임신부를 위한 의료서비스 무료이용, 수유시간보장, 힘든 노동 금지, 자녀가 있는 여성의 근무시간 단축 및 옹근생활비⁶⁾ 지급 등과 같은 모성보호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제20조).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필요한 의류, 분유 등을 무상공급하고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양육보조금과 담당 의료진을 배정하여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고 있음(제21조).

3) 아동 관련 사회보장 부문법 특징

-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의 권리 신장 관점에서 아동의 차별금지와 아동 이익의 최우선, 생명권 및 발전권 보장, 교육권, 건강권,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장애아동의 권리보장 등과 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⁷⁾ 또한 아동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북한이 가입한 국제협약은 해당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여 국제협약 이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제10조).⁸⁾
- 한편, 해당법령은 아동의 나이를 16세까지로 규정하고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회주의로동법」은 16세부터 노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법령 사이의 괴리가 존재함.⁹⁾ 또한 16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아동연령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존재함.¹⁰⁾
- 해당법령은 아동의 보육 및 교양에 집중되어 있는 법령으로 다자녀를 둔 여성의 사회보장 등 모성보호 관련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¹¹⁾

6) 남한의 육아휴직 급여를 말함.

7) 이규창, “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북한법연구』 제14호, 북한법연구회, 2012, 184면.

8) 이규창, “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북한법연구』 제14호, 북한법연구회, 2012, 178면.

9) 이규창, “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북한법연구』 제14호, 북한법연구회, 2012, 185면.

10) 이규창, “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북한법연구』 제14호, 북한법연구회, 2012, 187면.

11) 이윤진,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및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0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6, 205면.

3. 「여성권리보장법」

(1) 개요

-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은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2015년에 걸쳐 두 차례 개정되었음. 총 7개의 장과 55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칙규정과 함께 “사회정치적권리”,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로동의 권리”, “인신 및 재산적권리”, “결혼, 가정의 권리”,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법령은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며 그 지위와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남녀평등 원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제2조).

(2) 주요 내용

- 제2장 사회정치적권리에서는 여성의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의 권리를 천명하며(제11조) 선거권과 피선거권(제12조), 여성의 국적 취득·변경·보존의 권리(제13조), 국가기관에서 사업할 권리(제14조), 여성간부 등용 및 차별금지(제15조), 사법분야의 보호(제16조), 신소청원의 권리(제17조)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제3장은 교육, 문화, 보건 분야에서 남녀의 평등한 권리보장을 규정하며(제18조) 학교의 입학·진학·졸업배치(제19조), 신체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교육 및 시설구비(제20조), 부모 또는 후견인의 여자아이 의무교육 보장 의무(제21조), 직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구비(제22조), 남성과 평등한 문화생활 권리(제23조), 치료받을 권리와 여성전문 의료시설 구비 및 우선치료보장(제24조), 농촌거주 여성의 도시거주 여성과의 동등한 교육과 치료를 받을 권리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구비(제25조)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제4장 노동의 권리에서는 노동 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여성의 노동참가권,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 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음(제26조). 이에 따라 탁아소·유치원·편의시설 등을 통한 여성의 노동참가 여건 형성 보장(제27조), 직장 내 배치에서의 차별금지(제28조), 노동안전시설·노동위생시설 구비와 산전산후기간 및 수유기간 보장 등의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제29조), 여성에게 금지된 노동분야와 직종 및 임신부의 야간노동 금지 규정(제30조), 임금지급에 있어서 남녀

평등원칙 규정(제31조), 기술·기능자격·급수판정에 있어서 남녀평등원칙 규정(제32조), 산전 60일, 산후180일 휴가 보장 및 해당 기간 동안 근무 지시 금지(제33조), 결혼·임신·산전산후휴가·수유기간 등의 사유로 인한 제적금지(제34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여성들의 생활안정 및 치료조건 보장(제35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장 인신 및 재산적권리에서는 남성과 평등한 여성의 인신 및 재산권을 천명하며 인신의 불가침권(제37조), 건강, 생명의 불가침권(제38조), 유괴, 매매행위 금지(제39조), 매음행위금지(제40조), 여성의 인격, 명예존중(제41조), 가정에서 여성의 재산권(제42조), 재산상속에서의 남녀평등(제43조)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에는 여성의 남성과 평등한 결혼 및 가정의 권리를 천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의 결혼자유권(제45조), 가정폭행 금지(제46조), 여성이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이내에 남성의 이혼제기금지(제47조),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여성과 자녀 이익 보호원칙을 통한 해결원칙(제48조), 출산의 자유와 다산한 여성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각종 약품·식료품 등의 공급(제50조), 임신부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제51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3) 특징

-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은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사회주의 노동법」, 「노동보호법」 등의 선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관련 조항을 재확인 및 구체화하고 있으며, 다산을 장려하고 다자녀를 둔 여성의 생활여건 구비 및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¹²⁾
- 해당법령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권고사항의 인신매매 금지, 국적의 취득·변경·보유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 향유 및 남편의 국적변경에 따른 아내의 자동 국적변경 금지, 도시와 시골의 동등한 교육혜택 보장, 고용분야에서 여성의 차별 철폐, 임신·해산·산후조리와 관련한 사회보장제,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조치 등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음.¹³⁾
- 또한 「아동권리보장법」과 마찬가지로 여성권리와 관련하여 북한이 가입한 국제협약은 해당 법령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하여 국제협약 이행 의지를

12) 이규창, “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북한법연구』 제14호, 북한법연구회, 2012, 179-181면.

13) 이규창, “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북한법연구』 제14호, 북한법연구회, 2012, 182-184면.

나타내고 있음(제10조).¹⁴⁾

4. 「년로자보호법」

(1) 개요

- 북한의 「년로자보호법」은 2007년 4월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그리고 2012년까지 2차례 개정되었음. 해당법령은 총 6개의 장과 4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칙규정과 함께 “년로자의 부양”, “년로자의 건강보장”,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 “년로자의 사회활동”,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법령은 연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제1조), 연로자의 지위 및 보호, 사회적 관심을 해당 법령의 원칙으로 세우고 있음(제3조부터 제6조).

(2) 주요 내용

- 제2장 연로자의 부양 규정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자립적 생활에 지장이 있는 연로자는 국가가 부양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2조), 식료품 및 생활용품 보장(제13조), 연로자의 연금 및 보조금 보장(제14조), 연로자의 생활안정과 편리 도모를 위한 도시계획, 주거 등의 보장(제15조), 연로자의 개인재산소유 및 처분권 등에 대한 법적보호(제16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제3장 연로자의 건강보장 규정에는 연로자의 원만한 전반적무상치료제 혜택 보장(제17조), 연로자의 건강검진, 치료, 왕진 등의 의료서비스 보장(제18조), 연로자 치료에 있어서 현대의학과과학기술 및 고려치료 방법의 적극 도입 및 필요한 지역에 연로자전문병원 및 전문과 투입(제19조), 장수보약 및 영양식품 보장(제20조), 보청기·안경·지팡이 등의 보조기구 및 치료회복기구 생산공급(제21조), 연로자를 위한 대중체육활동 조직 및 조건 보장(제22조), 90세 이상 연로자의 사회적 혜택 및 100세 이상 연로자에 대한 관리 및 경험 소개(제23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제4장 연로자의 문화정서생활 규정은 기관·기업소·공민에게 연로자의 문화

14) 이규창, “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북한법연구』 제14호, 북한법연구회, 2012, 178면.

정서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면서(제24조), 도시 및 마을 건설계획 시에 연로자를 위한 문화시설 배치, 체육오락시설 및 회복치료기구 설치 등 문화정서생활거점 배치(제25조), 국가명절 및 연로자의 날에 연로자를 위한 예술체육활동 시행(제26조), 연로자를 위한 출판물 발행 및 보급(제27조), 문화오락시설 보장(제27조), 일정 시기에 연로자의 휴양, 관광 조직(제29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제5장 연로자의 사회활동 규정은 연로자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가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면서(제30조), 사회활동참가를 위한 각종 환경과 조건 마련(제32조), 연로자의 정년 보장(제33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3) 특징

- 북한은 해당법령을 통해 연로자를 60세 이상의 공민과 정년퇴직하였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의 공민으로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연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제2조, 제74조), 이는 남한의 남녀 구분 없이 만 65세로 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됨.
- 또한 해당법령은 연로자에 대한 인격모독·천대·치료거절·부당한 재산처리 등과 같은 연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보상이나 벌금 또는 몰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46조), 학대 방지 및 구제와 같은 노인의 안전 보장과 관련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¹⁵⁾

5. 「장애인보호법」

(1) 개요

- 북한의 「장애인보호법」은 2003년 제정되었음. 이후 북한은 2013년 7월 3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해당 법령의 개정을 단행하였음. 총 6개의 장과 55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인보호법의 기본”, “장애자의 회복치료”, “장애자의 교육”, “장애자의 문화생활”, “장애자의 노동”, “장애인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15) 이규창, “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북한법연구』 제14호, 북한법연구회, 2012, 177면.

- 해당법령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 및 안정되고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 보장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제1조). 따라서 장애인의 전반적인 권리보장(제2조), 장애인보호부문에 대한 투자(제3조), 장애발생 예방(제4조),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등급 평가(제5조), 장애인 차별금지(제6조), 영예군인 및 공로를 인정받은 장애인 우대(제7조) 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장애인의 회복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의 전반적 무상치료제 혜택을 보장하고 회복치료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전문 또는 종합적인 장애인회복치료 및 연구기관 조직하도록 하고 있으며(제9조, 제11조), 각종 장애인의 보조기구 생산 및 공급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제14조).
- 제3장은 장애인의 교육 강화 및 개선(제15조), 보육교양 및 국가 등의 비용부담(제17조), 소학교·중등교육·고등교육 받을 권리(제17조, 제18조), 특수학교의 조직운영·후원단체 지정 및 운영조건 보장·장학금 지급(제19조), 특수교육교재 출판 및 교육기구, 시설의 질적 생산보장(제21조), 직업학교 조직운영(제22조), 점자 및 수화의 발전과 도서, 전자매체의 적극 개발, 이용(제23조) 등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권리보장과 여건 형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음.
- 제4장은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해 규정하면서 각종 체육활동과 문화정서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5조, 제26조, 제27조), 장애인을 위한 출판물을 편집, 발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제29조).
- 제5장에서는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제30조). 구체적으로 장애인전문기업소 또는 단체의 조직(제31조), 장애인의 개별 여건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 및 당사자의 의견 청취(제32조), 장애인전문기업소 및 단체의 생산조건보장(제33조), 장애인의 노동보호조건 보장 및 노동보호조건 미 충족 시에 장애인 노동지시 금지(제34조), 장애인 및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노동시간 규정(제35조), 장애인의 휴식보장 및 휴양·요양 우선적 보장(제37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인의 양생원, 양로원 생활보장(제41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3) 특징

- 북한의 장애인보호법은 2013년 개정을 단행하면서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 보장 문구를 추가하는 등 여러 보호 규정을 강화하였음.
- 한편, 북한의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의 회복과 치료, 교육, 문화생활, 노동 등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사회권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북한은 2013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루어진 개정법에서도 여전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자유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¹⁶⁾
- 남한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세부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장애인보호법」의 경우 다소 선언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¹⁷⁾

16) 이규창, “북한 장애인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계기로”, 『인권과 정의』 제465호, 대한변호사협회, 제465호, 2017, 119면.

17) 이규창, “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북한법연구』 제14호, 북한법연구회, 2012, 173면.

참고문헌

1. 단행본

통일부, 『북한의 이해』, 2020.

한명섭, 『통일법제특강』, 2020.

2. 논문

김영희, “북한 사회보장법제의 동향과 남북 사회보장법제 통합의 방향”, 『북한법연구』 제16호, 북한법연구회, 2015.

이규창, “북한 장애인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계기로”, 『인권과 정의』 제465호, 대한변호사협회, 제465호, 2017.

이규창, “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북한법연구』 제14호, 북한법연구회, 2012.

이윤진,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및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0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6.

이철수, “2008년 북한 사회보장법에 대한 연구”,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3. 북한문헌

『광명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2009.

『김일성전집 66』,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법률출판사,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법률출판사, 2012.